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병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610 발의연월일: 2020. 7. 31.

발 의 자: 강병원・설 훈・기동민

이수진 · 양경숙 · 박재호

진성준 · 신동근 · 김홍걸

김경만 • 권칠승 • 전용기

김경협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지원을 필요로하는 가구의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관련 자료 등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학교 등 교육 당국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제공받지 못하므로 학생의 가정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라도 교사가이를 알 수 없어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사회보장 관련 자료 등을 교육부장관, 교육감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4항 중 "장에게"를 "장, 교육부장관, 교육감 또는 「초·중등 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	제12조(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
등) ① ~ ③ (생 략)	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	4
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사회보	
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	
보장기관의 <u>장에게</u> 제공할 수	<u>장</u> , 교육부장관, 교
있으며, 보장기관의 장은 필요	육감 또는 「초・중등교육법」
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	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
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	
인・단체・시설의 장이 이를	
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	
있다.	